

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(제12조 관련)

종 류	근 무 인 원	필 수 근 무 대 상
제1호	정원의 1/3이상	◦ 소방령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부서장급 이상 모든 간부 ◦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부서원 2명 내외 ◦ 통신·정보화 요원
제2호	정원의 1/5이상	◦ 부서장 이상 모든 간부 ◦ 각 부서 주무담당 ◦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부서원 2명 내외 ◦ 통신·정보화 요원
제3호	정원의 1/10이상	◦ 부서장 이상 모든 간부 ◦ 각 부서 주무담당 ◦ 통신·정보화 요원
제4호 및 제5호	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	